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6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2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권영세 · 최보운
배준영 · 추경호 · 이종배
김기현 · 김성원 · 김정재
서일준 · 박상웅 · 김상훈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·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,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,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(Hedge)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.

이에 금융·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5조제3항).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유가증권의 매각익·상환익(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”을 “유가증권·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·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·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·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(通算)한 후의 순이익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 ② (생 략)	제5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·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, 배당금, 수수료, 보증료, <u>유가증권의 매각익·상환익(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「법인세법」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), 보험료(보험계약의 만기·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,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가증권·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·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·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·외환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(通算)한 후의 순이익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